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93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전홍배 의원, 서도원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및 기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장기준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하며,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1. 2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아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발달장애인은 크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으로 구분되며, 2025년 8월 기준 달성군 관내 발달장애인은 총 1,505명으로 지적장애인 1,264명, 자폐성 장애인 241명으로 집계됨.
- 관내 보험가입 관련 사업(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의 평균비용인 보험료 5만원으로 상정하였을시 연 7,500만원이며 추후 연 평균 50여명 이상 증가하는 산출표를 작성하여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산됨.

작성 자

소속 및 직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명(연락처)

박주용 (☎ 2292)